

직제규정

(제정 1986. 1. 28.)

(전부개정 2024. 3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3조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직제 및 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정관, 학칙 등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조직) ① 본교에 총장, 부총장, 대학, 대학원, 대학본부, 부속기관, 산학기관 및 각종 사업단(이하 “각 부서”라 한다)을 둔다.

② 대학에 인문콘텐츠대학, 사회과학대학, 경영대학, 의과학대학, 공과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문화융합대학, 문화관광대학, 사범대학, 미래융합대학 및 수퍼스타칼리지를 둔다.

③ 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두며, 특수대학원에 경영행정대학원, 교육대학원, 문화산업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상담심리대학원 및 선교신학대학원을 둔다.

④ 대학본부에 교육혁신본부, 선교봉사처, 교무처, 학생취업처, 입학처, 기획처 및 총무처를 둔다.

⑤ 부속기관에 국제교류원, 평생교육원, 정보통신원, 농생명융합기술원, 도서관, 박물관, 학생군사교육단, 직장예비군연대 및 인권센터를 둔다. 다만, 학생군사교육단은 교무처장, 직장예비군연대는 총무처장이 관할한다.

⑥ 산학기관에 산학협력단 및 지역혁신단을 둔다.

⑦ 각종 사업단에 창업지원단, LINC3.0사업단, 대학혁신지원사업단,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및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을 둔다.

⑧ 각 부서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⑨ 각 부서에 장을 두며,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 및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「사무분장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2장 보직 및 임기

제5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, 본부장, 처장, 산학협력단장, 지역혁신단장, 실장(팀장을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, 그 밖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.

② 보직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외로 할

수 있으며,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교원은 전임교원, 직원은 일반직원으로 한다(이하 같다).

1. 부총장: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직원. 다만, 특임부총장은 탁월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음
2. 대학원장, 학장: 부교수 이상의 교원
3. 본부장, 처장, 산학협력단장, 지역혁신단장: 부교수 이상의 교원. 다만, 기획처장과 총무처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할 수 있음
4. 부분부장, 부처장: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
5. 부속기관장: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
6. 부설기관장: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
7. 학과장, 전공주임: 교원
8. 실장: 6급 이상의 직원. 다만, 비서실장은 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음

③ 보직 임면권자는 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다른 보직에 보하는 경우
2.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3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
4. 그 밖에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여 보직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임기)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임부총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실장은 임기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3장 조직

제7조(총장) ①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.

② 총장은 「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」 및 제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임면과 보직을 제청한다.

③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, 대외협력홍보실, 미디어센터를 둔다. 다만, 대외협력홍보실과 미디어센터는 대외부총장이 관할한다.

제8조(부총장) ① 본교에 교육부총장, 대외부총장,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. 다만, 특임부총장의 호칭은 그 직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.

② 부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, 관할부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교육부총장: 대학의 교육 및 학사 전반에 관한 업무
2. 대외부총장: 대학의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업무
3. 특임부총장: 총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

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부총장,

대외부총장, 특임부총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학사단위) ① 인문콘텐츠대학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
- ② 사회과학대학에 행정지원실 및 민간경비교육센터를 둔다.
- ③ 경영대학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④ 의과학대학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⑤ 공과대학에 행정지원실 및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.
- ⑥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⑦ 문화융합대학에 행정지원실 및 스타워트니스센터를 둔다.
- ⑧ 문화관광대학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⑨ 사범대학에 행정지원실, 교육연수원 및 교직지원부를 둔다.
- ⑩ 미래융합대학에 행정지원실 및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둔다.
- ⑪ 수퍼스타칼리지에 행정지원실 및 교양교육연구센터를 둔다.
- ⑫ 일반대학원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⑬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⑭ 행정지원실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대학본부) ①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실, 교육과정평가센터, 학생역량지원센터, 교수학습개발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선교봉사처에 선교지원실, 학생생활관, 대학교회, 사회봉사센터 및 e-복지관을 둔다.
- ③ 교무처에 교무지원실, 학사지원실 및 학생서비스센터를 둔다.
- ④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, 진로취업지원실, 체육부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, 진로개발센터, 카운슬링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.
- ⑤ 입학처에 입학지원실 및 고교-대학연계지원센터를 둔다.
- ⑥ 기획처에 기획예산실, 정책사업지원실, 대학성과관리센터 및 빅데이터센터를 둔다.
- ⑦ 총무처에 총무지원실, 재무지원실, 시설지원실 및 기록관을 둔다.

제11조(부속기관) ①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지원실, 국제교류센터 및 국제영재아카데미를 둔다.

-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지원실을 둔다.
- ③ 정보통신원에 정보통신지원실을 둔다.
- ④ 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 및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를 둔다.
- ⑤ 도서관에 학술정보운영실을 둔다.
- ⑥ 박물관에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.

제12조(산학기관)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지원실, 산학협력지원실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공동기기센터,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, 수퍼스타어린이집, 산학관커플링사업단, 4단계 BK21 탄소융합 혁신인재양성단,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연구단, 국어문화원 및 대학출판부를 둔다.

- ② 지역혁신단에 지역혁신지원실, RIS사업단 및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를 둔다.

제13조(사업단) ① 창업지원단에 창업지원팀, 초기창업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 및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을 둔다.

② LINC3.0사업단에 LINC3.0사업팀, 창의인력양성센터, 기업지원센터, 창업교육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산학연공유·협업센터 및 드론교육센터를 둔다.

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을 둔다.

④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인공지능사업지원팀을 둔다.

⑤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실감미디어사업지원팀을 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3-1-1-6 직제규정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재직중인 부처장에 대한 경과조치) 201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부처장은 2011년 2월 28일자로 부처장 보직이 면직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제조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2. 1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2.2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6.2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7조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9.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